

# 언어치료학과 교과과정 현황조사 및 인증기준 개발

윤혜련<sup>a</sup> · 권순복<sup>b</sup> · 김수진<sup>c,§</sup> · 배소영<sup>d</sup> · 신명선<sup>e</sup> · 황민아<sup>f</sup>

<sup>a</sup>윤언어교육원, <sup>b</sup>부산대학교 언어과학과, <sup>c</sup>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sup>d</sup>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sup>e</sup>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sup>f</sup>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 I. 서론

### 1. 언어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한국에서 언어치료사 교육 역사는 1960년~70년대에 대구대 특수교육과 등에서 부분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료원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의 언어교정을 위한 연구실이 개설된 것에서 시작한다. 공식적으로는 1980년 1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적십자사가 언어치료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였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교육과정은 기초교육과정이 3개월, 재교육과정이 1주일에 불과하였다. 1988년 대구대학교에,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정식으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면서 대한적십자사나 학회 등에서 운영하였던 비정규 언어치료사 양성교육과정은 중단되었다(이승환, 1999).

대한적십자사 양성과정의 개설 시점에서 28년이 지난 2007년, 본 연구 시점에 전국 언어치료학과의 수

는 학부 15개, 대학원 19개, 전문대학 8개로 모두 41개에 이르고 있다. 언어치료학은 장애인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응용학문분야이다. 언어치료학을 전공한 사람이 임상장면에서 치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대상자별로 다른 조건과 다른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김수진 · 이수향, 2009).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잘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초와 전공 분야 모두에서 이론적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뒤 이 내용을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잘 조합시켰음을 의미한다(Hegde & Davis, 1995).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는 자격증수여규정을 마련하여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해야 할 교과목을 <표 -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과목은 크게 기초 교과목과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및 실습교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와 전국언어치료학과대표자협의회(이하 전언협)을 중심으로 외적

<표 - 1> 자격증수여규정의 교과목 분류(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2007년)

과목 분류	기초교과목	전공필수 교과목	전공선택교과목	실습 교과목
과목 수	13개	5개	5개 유형	2개 과목
내용	개론(5): 언어병리학개론, 언어학개론, 청각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재활학개론 발달(3): 언어발달, 유아발달, 아동발달 구조(1): 언어기관 해부 및 생리 말(2): 음성학, 말과학 기타(2): 수화, 연구방법론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청각장애 삼킴장애 말언어장애진단 중복언어장애: 자폐언어, 구개열언어, 정신지체, 시각장애, 뇌성마비, 청각장애언어(중복) 언어병리학특강: 언어병리학세미나, 언어병리학연구 등	임상관찰 임상실습

으로는 국가가 언어치료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내적으로는 언어치료사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 교과과정 인증요소

언어치료가 학문적으로 태동한 곳은 유럽으로 100여 년 전 언어학과와 심리학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그 기틀을 다진 것은 미국이다. 미국에서도 정확하게 기원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대학에 전공이 설치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이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ASHA (American Speech and Hearing Association)에서 부여하는 CCC (Certificate of Clinical Competence)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려면 석사학위 취득 및 대학원에서 기초과학 교과목 27학점과 전문교과과정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서나 이 과목들을 이수했다고 하여 ASHA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은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승환(1999)은 인구 2억5천만의 미국에서 인증 받은 교육과정이 250여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인구 5천만인 우리나라는 50개 대학원에 과정이 개설되어야 산술적인 비율이 맞는다고 전망한 바 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학부와 대학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면 이미 언어치료 교육과정이 50개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숫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보다 자격 있는 언어치료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공학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인증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준비된 정도를 검토하고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인지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개설된 모든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포커스그룹이 교과과정에 대한 인증절차와 과정 및 기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토론에서 마련한 기준은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논의되었으며 설문조사결과와 집단토론 내용을 감안하여 연구자들이 함께 인증모형을 제안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자료 수집

#### 가. 문헌 검토 및 설문지 작성

본 연구는 2007년 7월 현재 국내 언어치료학과들의 교과과정 현황을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는 교과목인 증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교육과정(관찰 및 실습포함)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교육과정 현황에 대한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1>에 첨부하였다.

#### 나. 자료수집 대상 및 자료수집

2007년 7월 27일부터 각 학교 학과장에게 최종 수정된 협조문과 설문지를 보내어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으며, 8월 20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쳤다. 최초 자료수집 대상 학교 및 최종 분석 대상 학교는 <표-2>와 같다.

<표-2> 자료수집 대상 학교

	학부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전문 대학	합계
학교 수	14개	7개	12개	8개	41개
자료 송부 학교수	12개	7개	11개	8개	38개
분석 가능 학교 수	8개	7개	10개	7개	32개
분석 제외 사유	- 자료 송부 거부 및 미 송부, 자료 불충분 - 학부 및 전문대학: 2006년 이후 설립된 학교의 경우 교과과정 미비				

### 2. 자료 분석

자료의 수집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학교 유형을 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의 4개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류하였다. 둘째, 각 학교 유형의 교과목을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교과목, 전공필수교과목, 전공선택 교과목 및 실습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셋째, 각 학교 유형별 전체 개설교과목의 특성을 재분류하여 코딩하였다. 넷째, 각 학교 유형별 현행 개설교과목의 과목특성에 따라 전체 교과목을 재분류하였다. 다섯째, 각 학

교 유형별 개설교과목의 과목 수 및 학점 수에 따라 최소 및 최대치를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여섯째, 외국 혹은 국내 인증제도에 대한 문헌연구의 결과와 위의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질적인 분석을 통해 교과과정 인증 평가를 위한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일곱째, 추출된 인증평가 항목별 기준을 현행 교과과정에 기초하여 교과과정 인증을 위한 평가제도의 최적조건을 제안하였다.

### 3.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검토

교과과정(실습과정 포함)에 관한 분석결과는 전연합 회의에서 2차례의 공개발표를 통해 각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였다. 아울러 전자통신을 통한 자문을 받은 후 1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연합 소속 대학원, 학부, 전문대학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의 심층토의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확인된 현황을 토대로 실습을 포함한 교과과정 인증을 위한 평가제도의 최적조건을 추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학교 유형별 개설교과목 및 이수학점 현황

언어치료학과의 교과과정은 크게 일반교과목과 실습교과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실습교과목의 경우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양 자체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언어치료학의 특성상 중요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 시 실습교과목에 대한 항목은 일반 교과목과는 별도로 상세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 가. 전체 교과목

네 가지 학교 유형별로 개설되어 있는 전체 교과목 명칭을 분석한 결과, 학교 유형별 서로 다른 명칭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총 개수는 <표-3>과 같다. 과목명의 분석은 동일 혹은 유사한 과목일지라도 과목의 명칭이 다른 경우 별개의 과목명으로 분석하였으며, 한 개의 학교라도 개설하였다고 보고한 경우에 자료로 사용하였다. 학부의 경우 8개의 학교에서 서로 다른 명칭으로 총 90개의 과목을 개설한다고 보고함으로써 통일된 교과목 명칭에 대한 학교 간 합의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표-3> 학교 유형별 개설 교과목 총 개수

학교유형	학부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전문대	평균
개설 과목수	90	68	70	77	76.25

각 학교에서 실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개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학교 유형별 교과목 개설 현황

개설 과목 수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학부	전문대학
1~10개			0	2 (신설대학)
11~20개	4	6	0	1
21~30개	3	3	6	2
31~40개		1	2	1
41개 이상				1
학교 수	7개 대학원	10개 대학원	8개 대학교	7개 대학

<표-4>에 의하면, 학부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21~30개의 과목을 개설하였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11~16개의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개설과목의 수가 다양하였으나, 2개의 신설학교에서는 아직 개설되지 않은 개설예정 과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10개 이하의 과목학교가 2개교 있는 반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교과목이 상당수 포함된 2개교의 경우 최대 48개의 개설과목을 보고하였다. 학교유형별 졸업 이수학점의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학교 유형별 졸업 이수학점 수

학교유형	학부	대학원	전문대
최대치	80	45	125
최소치	42	24	45
평균	55.9	31.0	81

학교유형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표-5>참조). 학부의 경우 평균 전공학점수는 55.9학점이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31학점, 전문대의 경우는 81학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위의 결과는 졸업학점에 대한 설문지 응답자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대에서는 전공과목이 아니라 교양과목을 포함한 전체 졸업이수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판단하여 응답한 경우도 있었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 비전공자의 보충학점을 제외한 졸업학점으로 응답한 경우와 보충학점을 포함한 경우가 혼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차후 보완조사가 요구된다.

## 나. 실습 교과목

실습교과목은 임상관찰과 임상실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습교육과정에 대한 분석내용은 (1) 학점과 시수, (2) 관찰 및 실습 사례수 및 유형, (3) 감독자 자격 및 배정, (4) 관찰 및 임상실습 지도 방법 및 기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학점과 시수

전문대의 경우 4학점을 부여하는 곳이 세 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의 경우 6학점이 가장 많았다. <표-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원의 경우에는 2학점을 부여하는 곳이 응답한 17개 학교 가운데 아홉 군데로 절반을 넘었다. 전문대와 학부는 각각 1개 학교만을 제외하고 두 학기에 걸쳐 실습을 실시하였다. 대학원 9곳은 한 학기에 실시하고, 9곳은 두 학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었다. 2년을 기본 학제로 하고 있는 전문대와 대학원은 공히 입학 후 2년차에 3학기 와 4학기에 실습을 하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학부는 6학기 와 7학기 즉,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에 이르는 기간에 가장 많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였다. 임상실습시간에 있어서는 20개 학교가 협회에서 부과하는 3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60시간 이상을 실습하도록 하였다. 전문대의 경우 다섯 군데에서 70시간 이상을 부과하고 있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임상관찰과 임상실습 모두에 부여하는 학점이 2학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7> 참조). 전문대와 학부의 경우에는 임상실습보다 임상관찰에 적은 학점을 부여하고 있었다. 임상실습은 협회에서 규정하는 의무시간보다 초과하게 학교에서 실습시간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 많았으나, 임상관찰은 16개의 학교가 3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12개의 학교가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많은 학교들이 협회에서 지정한 최소 시간보다 많은 관찰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임상실습 및 관찰에 부여하는 학점

부여학점	전문대(8)		학부(12)		대학원(18)	
	실습	관찰	실습	관찰	실습	관찰
1학점		3		1		3
2학점	2	5	2	3	9	9
3학점	1		3	6	5	5
4학점	3		1		2	
6학점			4		1	
기타	1학점(1)				2~4학점(1)	

무응답한 경우 표기하지 않음

<표-7> 임상실습 및 관찰 최소 의무시간

최소시간	전문대(8)		학부(12)		대학원(18)	
	실습	관찰	실습	관찰	실습	관찰
30시간	1	4	1	2		11
40시간			1	3		2
50시간		2				
60시간	1	2	4	5	15	5
70시간	5		4		3	

### (2) 임상실습 및 관찰의 사례 조건

실습대상의 장애영역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 영역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12개의 학교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두 영역 혹은 세 영역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한 학교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다(<표-8> 참조). 그러나 이에 비해 임상관찰의 경우 다양한 장애유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전문대와 대학 및 대학원 모두 다섯 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제한적으로 4개 대학과 5개 대학원 과정만이 관찰에서 장애영역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임상실습에서 접해야 하는 사례 수에 대해서 적어도 두 사례 이상을 접해야 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는 총 24개교이다. 불과 6개 학교에서만 사례 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다. 사례관리에서 실제로 중요한 다른 문제는 사례 관리기간이지만, 이 조사과정에서는 사례관리 기간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없다.

<표 - 8> 임상실습 및 관찰 대상자 장애영역<sup>a)</sup> 제한규정

	전문대(8)		학부(12)		대학원(18)	
	실습	관찰	실습	관찰	실습	관찰
제한 없음	3		2	4	7	5
2영역 이상	<b>4</b>		<b>6</b>		<b>8</b>	
3영역 이상		2			2	2
4영역 이상			1	1	1	3
5영역 이상		5		5		8

<sup>a)</sup> 장애 영역은 언어발달장애, 성인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로 구별된다.

(3) 감독자 자격 및 배정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감독자 요인일 것이다. 대학원의 경우 한 감독자가 담당하는 실습학생의 수는 10명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와 학부의 경우 11명에서 15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 9> 참조). 조사 당시 실습생이 아직 없는 학교가 응답하지 않아 각 칸의 빈도가 매우 낮다. <표 -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찰 감독자는 전문대의 경우 담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교의 수가 비교적 많았다. 대학과 대학원의 경우는 10명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자의 자격증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학교(전문대 4곳, 학부 7곳, 대학원 16곳)에서 1급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2급과 준 혹은 기준이 없는 경우도 여섯 군데 있었다. 응답한 학교 가운데 29개의 과정에서는 급수 외에도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고 있는 감독자를 배치한다고 하였다. 감독자의 임상경력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도 세 군데 있었다. 자격증이나 임상경력과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감독자에 대한 기준의 전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공식적인 평가과정에서 최소한의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 9> 임상실습 및 관찰 감독자 1인당 담당학생 수

	전문대(8)		학부(12)		대학원(18)	
	실습	관찰	실습	관찰	실습	관찰
10명 이내	1	2	2	<b>8</b>	<b>14</b>	<b>17</b>
11~15명	<b>4</b>	1	<b>3</b>			
16~20명		1			1	
21~25명				2		1
26명 이상	1	<b>3</b>			1	

(4) 임상실습 및 관찰 지도 방법 및 대학 부속 실습기관

임상실습에 대한 감독 방법은 대부분의 학교인 25개 과정에서 직접감독과 간접감독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특기할 점은 직접감독만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여섯 군데였다. 또한 학부와 동일계열 전공자들과 비동일계열 전공자들에게 다른 감독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과정도 한 군데 있었다. 직접감독과 간접감독의 시간 배분은 조사되지 않았다.

<표 - 10> 임상실습 감독방법

	전문대(8)	학부(12)	대학원(18)
직접(현장+비디오) 감독만	2	1	3
간접 감독(사례회의 혹은 미팅)만			
직접+간접감독 함께	<b>4</b>	<b>8</b>	<b>13</b>
기타			* 전공자: 간접, 비전공자: 직접(1)

임상관찰은 직접관찰과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와 함께 임상가의 설명을 듣는 간접관찰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곳이 23개 교육기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간접관찰만 하는 곳은 전문대에서 한 곳에 불과하였고, 직접관찰만 하는 경우도 전문대 1곳, 대학 4곳, 대학원 6곳으로 총 11개였다. 임상관찰의 경우 장애영역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직접관찰시간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대의 3곳과 대학원 4곳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의 직접관찰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규정이 있는 경우 대부분(21개 과정)이 30시간 이상의 직접관찰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학 부설 실습기관을 하나 이상 갖고 있는 학교는 27개에 이르렀다. 단지 전문대학 한 곳과 대학원 다섯 곳만이 교내 부설 실습기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27개 대학 가운데 22개 대학이 한 개의 실습센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실습센터의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로 보강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실습교육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외부기관이 없다고 응답한 학교의 수가 14개인 반면 1개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도 14개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인 대

학교육에서 산학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현장에 따라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언어치료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외부 임상현장과의 연계교육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감독자의 관리 지도에 확대되어야 할 영역이다.

## 2. 외국 교과과정과의 비교

2007년 11월 현재 국내 각 학교의 교과과정은 기본적으로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에서 수여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수여규정”에서 규정한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의 자격증 수여규정과 언어치료학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및 유럽(프랑스)의 인증조건을 비교해보았다.

<표 - 11> 외국 인증조건과의 비교: 학점 수

	1급	2급	2급준
미국	75학점 (36학점 이상 대학원에서 이수)	없음	없음
유럽 (프랑스)	1700시간 (학점으로 환산 시 약 106학점)	없음	없음
한국	39학점 (24학점 이상 대학원에서 이수)	35학점	35학점

<표 - 11> 및 <표 - 12>에 따르면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격조건을 급수별로 차등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자격 급수에 따라 1급은 39학점, 2급과 2급 준은 35학점으로 차등규정하고 있으며, 이수과목의 경우에는 공통필수과목으로 5개의 전공과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급의 경우 학부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24학점만을 더 이수하도록 하였고, 학부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만 전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입학 후 보충학점으로 15학점을 더 부가하여 총 39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언어치료학 전공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최소 이수학점의 유형은 1급(학부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한 대학원 전공자), 1급(학부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 전공자), 2급(학부 전공자), 2급 준(전문대 전공자)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언어치료학 전공학과가 먼저 대학원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차츰 학부와 전문대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차등조건 규정은 차후 지속적으로 자격 급수 또는 조건 간 형평성의 문제를 불거지게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자격 급수 간 직무의 차별이 현실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다원적 체계는 자칫 하향평준화의 경향을 가지

<표 - 12> 외국 인증조건과의 비교: 교과목 분류

	기초 과학 교과목	전공 교과목	실습 및 관찰
미국	<b>합계 27학점</b> - 생물학, 물리학, 수학: 6학점 이상 - 행동 또는 사회과학: 6학점 이상 - 기초 의사소통과정(해부 및 생리학 기초, 물리학, 물리심리학기초, 언어학, 언어심리학 등): 15학점 이상	<b>합계 36학점</b> - 30학점은 전공영역 - 6학점은 집중 부전공영역 - 30학점은 대학원 수준에서 이수, 이 중 21학점은 전공영역에서 이수	<b>합계 375시간</b> - 임상관찰 25시간 - 임상실습350시간 (이중 250시간은 대학원수준에서 이수)
유럽 (프랑스)	<b>약 437시간</b> - 언어과학, 심리학, 학교체계의 조직, 병리학과 치료법, 발성, 청각학, 신경체계에 관한 기본지식, 물리과학, 본분 및 법제 등	<b>약 1100시간 이상</b> 각 장애에 대한 전문영역	<b>1200시간</b>
<b>기초, 전공, 실습학점 합산 학점수: 2급 35학점, 1급 대학원 24학점, 보충15학점</b>			
한국	과목명: 언어병리학개론, 언어발달, 언어학개론, 음성학, 청각학개론, 언어해부 및 생리학, 특수교육학 또는 재활학개론, 유아발달 및 아동발달, 말과학, 수화, 연구방법론	필수과목: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선택과목: 청각장애, 삼킴장애, 말언어장애진단, 중복언어장애, 언어병리학특강 등	관찰 30시간 실습 60시간

게 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이수 학점 수에 있어서 현 규정의 이수학점은 외국사례에 비교하여 너무 낮게 제시되어 있다. 외국 의 경우에는 급수별 구분이 없이 단일화된 이수학점 부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은 학점을 부가하고 있는 경우는 1급으로 총 39학점(실습포함, 학부 비전공자의 보충학점 포함)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실제로 학부(2급)에서는 졸업을 위한 최소 전공이수학점이 평균 55.9학점(<표-5> 참조)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문대(2급준)에서도 평균 81학점(<표-5> 참조)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학원(1급)에서는 학부 및 전문대의 이수학점과 큰 차이를 보이며 보충학점을 포함하여 최대 39학점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부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현 자격증 수여규정이 학부 비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최초로 자격증 수여규정이 마련된 1990년대 후반 국내 상황에 대한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 언어치료학 전공학교가 41개로 증설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비전공 대학원생 중심의 지나치게 낮은 이수학점 규정에서 탈피하여 이수 학점의 상향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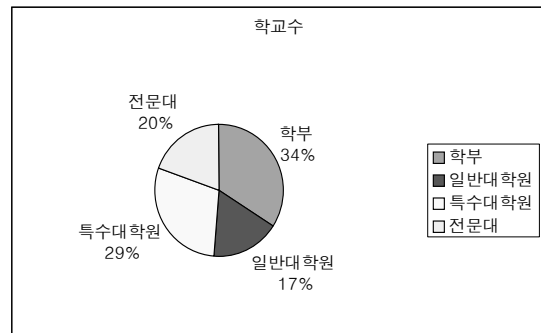
셋째,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는 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개의 전공과목(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신경언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과 2가지 유형의 실습과목(임상관찰, 임상실습)이 있으며, 전국의 모든 전공학교에서 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사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 유형별 규정, 즉 기초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의 필수 이수학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협회에서는 기초교과목의 예시와 전공교과목의 예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초교과목의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공교과목의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명칭을 5개의 과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해당 과목의 심화학습 과목을 동일 교과목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기초교과목을 보다 정확히 분류한 후 최소 기초교과목 이수학점을 부가하도록 하며, 전공교과목에서는 필수과목 규정을 삭제 하되 5개 과목 유형에 해당하는 과목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학부 비전공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에 언어치료학과 관련된 기초과목을 인정하도록 하면 총 이수 학점의 상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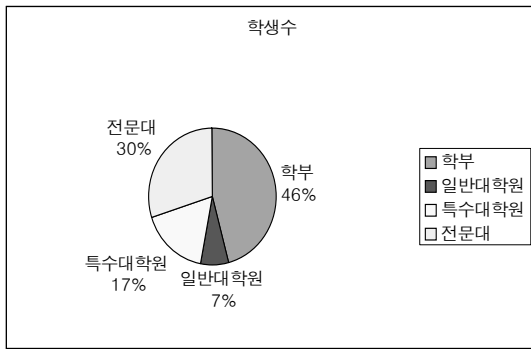
넷째, 학부, 일반대학원, 전문대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당 학점시수는 3학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과목당 학점시수가 2학점으로 학점수 중심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각 학교 유형별 학생규모에 대한 고려는 교과과정에 대한 기준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변인이 되므로, 여기에서 각 학교 유형별 입학정원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13>, <그림-1>, <그림-2>와 같다. 1급 자격에 해당하는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보다는 특수대학원의 수가 더 많으며, 학생 수의 경우에는 전체 대학원 입학정원의 70% 이상이 특수대학원에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1급의 교과과정은 과목당 2학점을 기본 시수로 하는 특수대학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표-13> 학교 유형별 입학정원(2007년 8월 현재)

	학부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전문대	합계
학교 수	14개 (34%)	7개 (17%)	12개 (29%)	8개 (20%)	41개
총 입학 정원	612명 (46%)	92명 (7%)	230명 (17%)	400명 (30%)	1,334명



<그림-1> 학교 유형별 학교 수 비율



<그림 -2> 학교 유형별 학생 수 비율

### 3. 교과과정 인증을 위한 최적 조건 제안

이상에서의 국내 언어치료학과 실습과목을 포함한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결과 우리나라 언어치료학과의 인증을 위한 교과과정 최적 조건에 대해 일반교과목과 실습교과목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 가. 일반교과목

#### (1) 학교 유형별 권장 이수학점

2007년 현재 학교 유형별 이수학점은 1급 39학점, 2급과 2급준 35학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의 이수학점은 지나치게 하향되어 있으므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현황조사 및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의 결과이다. 이 때 어느 정도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전공개설학교들의 현황을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외국 사례와의 비교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표 - 14>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의 이수학점을 제안하는 바이나, 차후 단계적으로 2급 및 2급준에 해당하는 학부 및 전문대의 이수학점을 60학점 수준까지 상향하고 이에 맞춰 1급 이수학점 역시 60학점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표 - 14> 과목분류별 이수학점 요약표

학점 수	대학원(1급)		학부(2급) 전문대학(2급준)
	학부 전공자	학부 비전공자	
정규과정	대학원과목 24학점	대학원과목 24학점	45학점
이수 과목	대학원과목 24학점 임상실습: 45시간	기초과목: 15학점 전공과목: 30학점 임상관찰: 30시간(1학점) 임상실습: 80시간(2학점)	기초과목: 15학점 전공과목: 30학점 임상관찰: 30시간 임상실습: 60시간
비고	이미 학부에서 기초 및 전공과목 45학점을 이수함	- 타 전공 학부에서 이수한 기초과목을 일부 인정함 - 전공과목의 경우 대학원에서 보충학점으로 이수하도록 함	
합계	학부 45학점+대학원 24학점 = <b>합계 69학점</b>	보충 21학점+대학원 24학점 = <b>합계 45학점</b>	<b>합계 45학점</b>

<표 - 15> 과목유형별 분류에 따른 이수학점

과목분류	기초과목	전공과목
		교육학
심리학		신경언어장애 관련과목
언어학		조음음운장애 관련과목
청각학		음성장애 관련과목
기타(윤리학, 통계학 등)		유창성장애 관련과목 기타 전공 관련과목
필수 이수학점 수	합계 15학점	각 장애영역별 3학점 × 5과목 = 15학점



<표 - 16> 교과과정 인증평가 요소 및 배점

		배점
일반 교과목	기초교과목(30%) 평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총합 75점
	전공교과목(70%) 평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총합 175점
합계	일반교과목 100%	전체 인증평가 총점(1000점) 중에서는 250점(25%)
실습 교과목	임상관찰(35%) 평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총합 87점
	임상실습(65%) 평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총합 163점
합계	실습교과목 100%	전체 인증평가 총점(1000점) 중에서는 250점(25%)

(2) 과목 유형별 분류에 따른 이수학점

외국의 경우에는 필수 이수과목을 언어치료학을 전공하기 위한 기초과목과 전공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이수학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과목의 구분만 있을 뿐 과목 유형별 필수 이수학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목유형별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필수 이수학점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의 전공필수 과목을 특정 교과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5개 전공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것으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취지아래 과목유형별 분류 개선방안을 <표 - 15>와 같이 제안하였으며, 전체 개설 과목을 분류하여 인정과목 요약표를 작성하였다.

(3) 교과영역 인증평가 요소 및 배점

이상에서의 연구결과, 실습을 포함한 교과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인증평가 요소 및 배점은 전체 인증평가 총점을 1000점으로 하였을 때 50%에 해당하는 500점을 할당하였으며, 일반교과목에 25%, 실습교과목에 25%의 비율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교과목의 경우 기초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의 평가로 나누어 <표 - 16>과 같이 제안하며, 각 영역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은 <표 - 17> 및 <표 - 18>과 같이 제안한다.

<표 - 17> 기초교과목 인증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기초교과목을 100%로 하였을 경우)

		항목	점수 (백분율)	합계
기초교과목	1	기초 교과목의 개설 학점수	22(29.3%)	총 75점 (30%)
	2	교육학 관련 개설 과목수	8(10.6%)	
	3	심리학 관련 개설 과목수	8(10.6%)	
	4	언어학 관련 개설 과목수	8(10.6%)	
	5	청각학 관련 개설 과목수	8(10.6%)	
	6	기타 개설 과목수	8(10.6%)	
	7	기초교과목의 인정과목 요약표	8(10.6%)	
	8	기초교과목의 개설 비중	5( 6.7%)	

<표 - 18> 전공교과목 인증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전공교과목을 100%로 하였을 경우)

		항목	점수 (백분율)	합계
전공교과목	1	전공 교과목의 개설 학점수	40(22.8%)	총 175점 (70%)
	2	언어발달장애 관련 개설 과목수	12( 6.8%)	
	3	신경언어장애 관련 개설 과목수	12( 6.8%)	
	4	조음음운장애 관련 개설 과목수	12( 6.8%)	
	5	음성장애 관련 개설 과목수	12( 6.8%)	
	6	유창성장애 관련 개설 과목수	12( 6.8%)	
	7	기타 전공 관련 개설 과목수	12( 6.8%)	
	8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교과과정 안내 지침서	25(14.2%)	
	9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생 이수 현황 지침서	12( 6.8%)	
	10	졸업 이수학점	26(14.8%)	

나. 실습교과목

현재 상황에 대한 위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최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증과제 준비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증통과의 하한선은 기준 목표의 70%이상 수준으로 정했다. 평가기준은 현재 최빈치가 80%이상의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실성을 꾀한 것이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기준으로 전체적인 기준을 100%로 하여 점진적이고 전반적인 국내 교육기관의 수준향상을 도모한다. 임상실습과 임상관찰은 250점이 배점되므로 이 중 35%를 차지하는 임상관찰은 87점을 만점으로 하고 65%를 차지하는 임상실습은 167점을 만점으로 하였다(<부록 - 2>의 총점에서 각 항목별 배점 참조).

&lt;표 - 19&gt; 임상실습과 임상관찰을 100%로 하였을 때 점수의 비중

	항목	점수(백분율)	
임상실습	학점 및 시수	38 (15 %)	총 65%
	실습방법	26 (10 %)	
	감독방법	36 (15 %)	
	실습기관	25 (10 %)	
	감독자	38 (15 %)	
임상관찰	학점 및 시수	25 (10 %)	총 35%
	관찰방법	25 (10 %)	
	관찰기관	12 ( 5 %)	
	감독자	25 (10 %)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임상실습에서 객관화 할 수 있는 각 요소별 인증평가 기준은 <표 - 20>과 같다. 이 기준은 본 연구과제 팀에서 기존의 결과와 바람직한 방향의 절충점으로 제안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정될 수 있는 것임을 밝혀두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직무내용이 다르므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및 대학원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lt;표 - 20&gt; 임상실습의 인증평가 기준

	항목	백분율
학점 및 시수	학점	15%
	시수	
실습 방법	실습 사례 장애영역	10%
	실습 사례 수	
감독 방법	직접 감독	15%
	간접 감독	
	표준화된 감독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관계자 숙지상태)	
실습 기관	부설기관 유무	10%
감독자	담당학생 수	15%
	자격증 구분	
	임상 경력	
	전담요원의 배치	

임상관찰 평가과정에서 객관화 할 수 있는 각 요소별 인증평가 기준은 <표 - 21>과 같다. 이 기준은 임상실습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과제 팀에서 기존의 결과와 바람직한 방향의 절충점으로 제안하는 것이므로 이후 조정될 수 있는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임상실습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및 대학원의

기준에 차이를 두고 채점표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lt;표 - 21&gt; 임상관찰의 인증평가 기준

	항목	백분율
학점 및 시수	학점	10%
	시수	
관찰 방법	직접 관찰 관리	10%
	관찰실습 사례 장애영역	
	표준화된 감독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관계자 숙지 상태)	
관찰기관	부설기관 유무	5%
감독자	담당학생 수	10%
	자격증 구분	
	임상 경력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7년 7월에 실시된 전국 언어치료학 전공학과 대상의 학과인증제를 위한 기초연구(교과과정, 교육환경, 인증절차) 중에서 교과과정 분야에 관한 현황분석 및 이를 토대로 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현황분석을 위해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개설교과목과 이수학점, 실습조건과 실습환경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개설과목 수와 교과목특성, 실습과정과 조건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적인 교과과정은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의 자격증 수여기준에 맞춰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학부, 전문대학의 4가지 학교유형별로 교과과정과 교육여건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언어치료학이 선진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는 교과내용, 이수학점, 실습시간 등에서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교과 및 실습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기 위하여, 현재 상태에 대하여 수집한 위 연구 결과를 각 학교유형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에게 제공한 뒤 충분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가? 둘째,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격을 얻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주는가? 셋째, 최

대의 교육적 성취를 얻기 위해 교육과정이 잘 연결되는가? 넷째, 개별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의 연결이 얼마나 보장되는가? 다섯째, 적절한 학문적, 경험적 배경을 갖춘 능력 있는 교수진이 가르치는가? 여섯째, 학생들의 학업과 임상적 수행이 학기에 따라 향상되는가? 일곱째, 학생들이 충분한 연구경험을 갖는가? 이를 통해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전개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가? 여덟째, 학생 자신의 개인적이고 전문적 성취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유연한 기회를 제공하는가?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증을 위한 최적조건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과교육의 경우 기초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을 30:70의 비율로 반영하고, 교과목의 개설학점 수, 지속성, 전문성 등이 언어치료학과 관련해서 평가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교과목에는 말-언어-의사소통에 대한 기초과학적 지식습득이 중요하다. 교육학, 심리학, 언어학, 청각학 및 관련 학문 영역의 기초지식 습득도 전문가 양성에 필수적이다. 전공교과목의 경우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를 중심으로 하되, 언어치료분야 전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증요소들이 발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습교육의 경우 임상관찰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을 35:65의 비율로 반영하고, 세부적으로는 실습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사례수, 시간, 감독의 엄격성, 표준화된 평가를 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관찰의 경우 학점과 시수, 관찰방법, 관찰기관, 감독자, 지침서가 인증평가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임상실습의 경우 학점과 시수, 실습방법, 감독방법, 실습기관, 감독자 특성이 인증평가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의 제안에 덧붙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과인증제 실시를 위해서는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하루 빨리 구성되어 구체적인 인증과정과 인증요소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증위원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되어야 하며, 이 때 각 학교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자문단이 별도

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협회에서 교부하는 자격증 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1급, 2급, 2급준의 자격증 교부체계가 되어있고 자격증을 위한 다양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과정들은 이 기준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 앞으로 자격증을 단순화하고, 전문언어치료사자격증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언어치료사들이 일하는 상황과 대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평가와 자격증 체계만으로는 질적인 관리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언어치료사와 보건소 및 병의원을 포함한 의사소통장애 전문치료사 양성을 위해 상급 교육기관을 통한 각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교과과정 인증기준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기초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명칭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언어치료사 직무분석(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2005)이 기준이 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내용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상관찰과 임상실습에서 학생이 습득해야 하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임상감독자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된 지침서를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지침서의 주요내용들이 바로 인증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습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수진·이수향(2009). 언어치료 임상실습 교육모형 개발 및 적용. 『언어청각장애연구』, 14(4), 413-428.
- 이승환(1999). 한국의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의 발자취와 전망. 『언어청각장애연구』, 4(1), 5-14.
-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2005). 『언어치료사 직무분석』. 서울: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2007). 『언어치료학과 학과인증제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 Hegde, M. N., & Davis, D. (1995). *Clinical methods and practicum in speech-language pathology*.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 〈부록 -1〉 설문지 문항

※ 교과과정(2004년도 2학기~2007년도 1학기까지 최근 3년간 개설된 실제 과목을 중심으로 예시와 같이 정확히 기입해주십시오. 칸이 더 필요할 경우 필요한 만큼 추가로 만들어서 기입해주십시오)

	과목명	학점수	필수/ 선택	실제 개설연도 및 학기	권장 이수 학년	비고
예	유창성장애 세미나	3	선택	2005-2	3학년	격년 개설
	언어발달장애	3	필수	2005-1, 2006-1, 2007-1	2학년	매년 1학기 개설
1						
2						
3						
4						
5						

※ 실습교과 현황(예시와 같이 각 학교의 내규대로 자세히 기입해주십시오)

#### 가. 임상관찰

		예시	내용	
학점수		3학점		
시간수(60분단위)		50시간		
해당학기		3학년 1학기		
기간		1학기(6개월)		
사례 유형 수	아동	최소 5개 장애영역 10사례(30시간)		
	성인	최소 3개 장애영역 5사례(20시간)		
	기타	최소 2개 기관관찰 2시간		
관찰 방법	직접관찰	최소 6개 기관 30시간		
	간접관찰	비디오 관찰 20시간		
	기타	보고서 직접 피드백 최소 2회기 및 관찰보고서 발표 2시간		
관찰 기관	병원	2곳(00병원 이비인후과, 00병원 신경과)		
	복지관	2곳(00복지관, 00복지관)		
	학교	1곳(00초등학교; 특수학교)		
	대학부설	1곳(00대학교 부설 언어치료실)		
	사설기관	1곳(00언어치료실)		
	기타	비디오 관찰		
	합계	7개 기관 이용		
※ 감독자	전체인원	7명(병원 2명, 복지관2명, 학교1명, 사설1명, 대학부설 1명)		
	자격증 소지여부	1급	4명	1급
		2급	2명	2급
		2급준(준)	0	2급준(준)
		없음	1명	없음
	임상경력	5년 이상	2명	5년 이상
		3년~5년 미만	3명	3~5년 미만
		1년~3년 미만	1명	1~3년 미만
		1년 미만	1명	1년 미만

※ 관찰 감독자는 임상관찰과목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목교수가 아니라 직접(혹은 비디오) 관찰기관에서 관찰을 맡은 감독자를 의미함.

나. 임상실습

		예시		내용		
학점수		3학점				
시간수(60분단위)		60시간				
해당학기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				
기간		1년				
사례 유형 수	아동	최소 2개 장애영역 3사례(40시간)				
	성인	최소 1개 장애영역 2사례(20시간)				
	기타					
실습 방법	직접	평가, 상담, 치료, 보고서 60시간이상				
	기타	부모교육 및 상담 강의 10시간				
감독 방법	직접	현장	주 1회			
		비디오	주 1회			
	간접	매주 개별미팅 1시간, 전체 미팅 2시간				
실습 기관	병원	2곳(00병원 이비인후과, 00병원 신경과)				
	복지관	2곳(00복지관, 00복지관)				
	학교	1곳(00초등학교;특수학교)				
	대학부설	1곳(00대학교 부설 언어치료실)				
	사설기관	1곳(00언어치료실)				
	기타	비디오 관찰				
	합계	7개 기관 이용				
※ 감독자	전체인원	7명				
	자격증 소지여부	1급	6명	1급		
		2급	1명	2급		
		2급준(준)	0	2급준(준)		
		없음	0	없음		
	임상경력	5년 이상	4명	5년 이상		
		3년~5년 미만	3명	3~5년 미만		
		1년~3년 미만	0	1~3년 미만		
		1년 미만	0	1년 미만		

## 〈부록 - 2〉 총 1000점을 기초로 한 전체 항목별 인증 기준안

		항목	배점	총점	
교과과정	기초교과목평가	기초교과목의 개설 학점수	25 점	75점	250점
		교육학관련 개설 과목수	7.5점		
		심리학관련 개설 과목수	7.5점		
		언어학관련 개설 과목수	7.5점		
		청각학관련 개설 과목수	7.5점		
		기타 개설 과목수	7.5점		
		기초교과목의 인정과목 요약표	7.5점		
		기초교과목의 개설 비중	5 점		
	전공교과목평가	전공교과목의 개설 학점수	37.5점	175점	
		언어발달장애관련 개설 과목수	12.5점		
		신경언어장애관련 개설 과목수	12.5점		
		조음음운장애관련 개설 과목수	12.5점		
		음성장애관련 개설 과목수	12.5점		
		유창성장애관련 개설 과목수	12.5점		
		기타 전공관련 개설 과목수	12.5점		
		개설 전공과목에 대한 교과과정 안내 지침서	25 점		
		전공교과목에 대한 학생 이수현황 지침서	12.5점		
		졸업 이수학점	25 점		
임상실습	임상실습	학점 및 시수	37.5점	162.5점	250점
		실습 방법	25 점		
		감독 방법	37.5점		
		실습 기관	25 점		
		감독자	37.5점		
	임상관찰	학점 및 시수	25 점	87.5점	
		관찰 방법	25 점		
		관찰 기관	12.5점		
		감독자	25 점		
		감독자	25 점		
교육여건	교육환경: 시설 및 장비	임상실	40 점	120점	400점
		실험실습실	20 점		
		실습기자재	20 점		
		전용강의실 및 첨단강의실	20 점		
		1년 학과 예산의 실습비 지출비율	10 점		
		행정관련 지원	10 점		
	학생평가	학생평가	120점	120점	
		교수진	전임교원의 수	40 점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40 점		
	학업, 진로, 취업지도 유무		20 점		
상담파일 유무	20 점				
양 학회 참가 횟수	40 점				
인증절차	인증절차	서류 및 증빙서류	50 점	100점	100점
		준비 및 참여도	50점		
합계				1000점	